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당일 임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사대금 지급구조 상 임금 지급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선지급하고 해당 임금을 건설사로부터 후수령하는 경우 선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업소개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8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동법 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직업소개사업자’라고 한다.)가 선지급한 때에는 선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단,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2.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내역(임금과 근로자 서명이 포함된 선지급확인서 또는 통장내역사본 등)
3.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 내역에 대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확인서
4. 선지급한 건설근로자 임금과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5.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직업소
개사업자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및 직업소개사업자 통장사본
제12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7조7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가 건
설근로자의 임금을 선지급 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직업소개사업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사대금의 청구) ① ~ ⑥ (생략) <u><신설></u>	제7조(공사대금의 청구)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동법 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직업소개사업자’라고 한다.)가 선지급한 때에는 선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단,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u> <u>1.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u> <u>2.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내역(임금과 근로자 서명이 포함된 선지급확인서 또는 통장내역사본 등)</u>

제12조(공사대금의 지급) ① ~ ⑥ (생략)
 ⑦ 건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이외의 자의 알선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3.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 내역에 대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확인서

4. 선지급한 건설근로자 임금과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5.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및 직업소개사업자 통장사본

제12조(공사대금의 지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7조7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선지

⑧ (생 략)	<u>급 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u> <u>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u> <u>한 후 직업소개사업자의 계좌로</u> <u>지급하여야 한다.</u> ⑧ (현행과 같음)
----------------	--